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85 발의연월일: 2022. 4. 5.

발 의 자:유기홍・양정숙・강민정

남인순 • 윤영덕 • 송재호

이학영 · 김두관 · 이형석

임호선 · 오영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승인·포기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관계도 복잡해짐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재산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라는 짧은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은 2002년 개정된 이래 개정된 바 없으므로, 기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 승인· 포기 기간을 기산하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의 악의, 착오 또는 무지 등으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미성년 상속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 가정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19조제3항 및 제10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9조제3항 중 "3월"을 "1년"으로 한다.

제10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0조의2(미성년자의 단순승인·포기에 대한 특례) 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제1019조제1항에 따라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 견인이 단순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19조제3항 및 제10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1019條(承認, 抛棄의 期間) ① 第1019條(承認, 拋棄의 期間)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020조의2(미성년자의 단순승 인 · 포기에 대한 특례) ① 상 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제1019조제1항에 따라 단순승 인 또는 포기하려는 때에는 법 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 성년 상속인의 친권자 또는 미 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려

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